사설

수해복구 형평성 기하라

한달전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는 아직까지 아수라장이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강원, 경기북부 일원의 약초재배지는 흙더미에 뭍혀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참담하다. 2, 3년 기울인 정성이 며칠사이에 공수레로 돌아간 격이어서 안타까움이 더하다. 그러나 더욱 참담한 것은 어느 누구로부터 뚜렷한 복구약속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 지원기준 개정과 수해복구 지원에 대해 떠들석한 사회분위기와는 달리, 복구비 지원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약용작물의 경우 각 군단위에서의 정확한 피해집계 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 비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경기도 연천지역을 비롯 포천, 강원도 철원지역의 농가집계 피해면적은 약 1천3백80ha(4백50만평), 금액으로 환산하면 1백84억원에 달한다. 시설투자 비용과 인건비 그리고 타지역과 집계되지 않은 소규모 재배지를 포함하면 약용작물 전체 피해액은 2~3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수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 지원기준은 수도작과 과일 화훼등 몇개 항목에만 책정돼 있어 대단위 약초 전업농의경우 피해가 아무리 심해도 이렇다할 수해 복구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수입개방화 대응작물로 연간 3천억 규모에 달하는 한약재는 우리 민간에 뿌리 내린 한약의 원료로서 한의학 발전은 물론 국민보건에도 상당부분 기여해 온 소중한 전통의약이며 주곡 못지 않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입약재의 범람으로 국내 약용작물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마당에 수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불감적 태도는 재배농가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위축시킴으로서 종국엔 한약재의 전량 수입의존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국내 약용작물 생산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아쉬운 때다.

품질 규격화를 위해서

복지부는 최근 「한약재규격화 및 가격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한약 수요 증가에 따른 품질 및 가격의 합리적 관리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다시말해 국민의 건강과 주머니경제를 고려한 조치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상 문제일뿐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유통시장 정리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어찌됐건 이번 조치는 국민을 위한다는 대명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졸속행정이라는 회의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한약재 제조업체의 시설현황도 제대로 점검치 않은채, 또 '시기상조'라는 관련 업계의 지배적 여론도 무시한채 규격품 확대 실시를 밀어 부치고 있다. 또 자율에 맡겼던 한방병·의원의 규격품사용도 오는 10월 1일부터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인 한국생약협회는 국산한약재의 경우 농민이 한방병의원에 종전대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 줄 것을 건의 했으나, 복지부로 부터는 아직 명확한 회신이 없는 상태다. 한편 규격화 대상 품목을 현행 36종에서 50여종을 더 늘린다는 것은 품질규격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재고되어야 한다. 복지부가 내세우고 있는 규격화율 90% 목표는 품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수치증가에 불과하다. 지금의 한약재규격화 제조업체들의 제반능력을 비춰 볼때 현행 36종의 품질규격화도 요원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격화율만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품질이 보증되고 보장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 「품질과 가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품질규격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이해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약재 장기저장법 개발

원자력硏 감마선조사로 4년까지

방사선을 이용해 한약재의 저장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의약품제조에 필요한 진액 추출량도 20% 정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식품공학연구팀(팀장 변명오)은 한방 약재류를 완전포장 상태에서 감마선을 쬐면 약제에 붙은 미생물과 해충이 완전히 죽어 저장기간을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 이상 늘릴 수 있고 의약품제조에 필요한 유효성분 추출률도 기존의 가열처리나 화학약품 사용때 보다 5~20% 늘며 추출시간도 3분의 1 밖에 안걸린다고 밝혔다.

◇방사선을 이용해 한약재의 저장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사진은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에 진열돼 있는 약재).

지금까지 한방약재류로 부터 의약품제조에 필요한 유효성분을 얻으려면 가열처리하거나 화학약품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유효물질 추출을 위해 한약재를 가열할 경우 유효성분 파괴율이 높고 가열로 인해 유효성분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많았으며 화학약품을 사용해 진액을 추출하려면 추출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대체방법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약재의 저장 역시 한약재에 붙은 흙 등을 통해 미생물에 오염돼 얼마 안돼 부패되고 벌레가 많이 생기며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방사선 이용법의 개발로 한약재의 종류에 따라 4~10 KGy(킬로그레이) 범위의 감마선을 쬐면 유효성분의 변화 없이 살균과 살충이 동시에 되고 진액 추출률도 늘어나 한약재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더욱이 방사선을 이용하면 유해물질 잔류와 생성 등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잔류 허용기준 마련

복지부 내년부터 시행

61종 대상

살충·살균제 등 61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새로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아직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61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각종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이번에 기준이 마련된 농약이 허용치 이상 발견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전량 폐기된다.

이번에 기준이 새로 마련된 농약은 살충제 알라클로드 등이다.

복지부는 농약 잔류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 농약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농림부-한국농기계工協

농림부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태현)은 가을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한달동안 「96 가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기간」을 정하고 본격적인 농기계 수리활동에 나섰다.

특히 이번 순회 수리봉사기간중 농기계 점검·정비 및 수리비는 무상이며 현지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기계는 인근 정비공장이나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수리함으로써 철저한 사후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용 요령에 대한 대농민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7월 수해로 농기계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농기계 긴급수리를 실시했던 경기 북부와 강원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수리봉사기간중에도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별재해지역 선포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회장 엄홍우)는 20일 성명을 발표, 지난 7월말 수해를 입은 경기 강원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현재수해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군부대 등 공공시설에 우선하고 있을뿐 수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며 강력히 건의했다.

내방

△김철호 충남대 농과대학 교수 △김영우 태극 남양식품 사장 △정형모 부회장 △박종연 이사 △이성덕 경기 구리시 사무소장 △신영달 경북 영천시 공판장장

인사

「免」

△황순수 전남 완도군 사무소장(96년 8월 27일부) △서중석 전남 순천시 공판장장(96년 8월 27일부)

「任」

△이진욱 경남 진주시 동부 공판장장(96년 7월 1일부) △윤석태 충북 괴산군 공판장장(96년 8월 26일부)

유실 농경지 관리

농경지 유실지역과 매몰지역은 깊이갈이, 퇴비 등 유기물과 석회의 다량 사용과 함께 메밀, 가을배추, 풋베기 사료작물 등 대파작물의 재배가 요구되고 있다.

농경지 유실지역은 토양종 인산과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고 산성 토양인 경우가 많아 깊이갈이와 함께 인산질 비료, 퇴비, 석회 등을 많이 줘야 한다는 것.

유기물·석회 다량사용

농촌진흥청은 최근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지역 농경지에 대한 토양관리와 대파작물 재배요령을 발표했다.

농진청이 발표한 토지관리 요령에 따르면 또한 매몰지역의 경우 돌, 자갈 등 이물질과 함께 표층에 다량의 모래가 쌓여 있어 지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물질 제거와 정지작업이 요구되고 있다.